

의안번호	2215813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6.02.02.
추계번호	25C74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38억 3,700만원, 2030년 287억 5,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311억 1,000만원(연평균 26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대학원 입학금 폐지 (안 제11조)	23,837	24,960	26,150	27,412	28,751	131,110	26,222

주: 대학 학부 과정 입학금 폐지 당시 지원 비율을 준용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학교의</u>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u>사람으로부터</u>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입학금”이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입학 시 징수하는 비용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1)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대학 학부 과정의 경우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³⁾에 따라 2023년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대학원은 여전히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³⁾
 - － 참고로,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입학금 전면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음
 - 학부 입학금 폐지 당시 교육부는 입학금 감축분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입학금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20%, 전문대학의 경우 33% 지원을 합의함⁴⁾
 -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신·편입생 지원금을 신설하여 7년간('18~'24년) 운영하였음
- * [참고자료]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현황

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 17. (생략)

②·③ (생략)

3)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 ⑫ (생략)

4) 교육부,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2018.02.19

- 학부 입학금 폐지 사례를 준용하여 대학원 설립 주체 및 운영구조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하다고 가정
 - (국·공립대학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입학금 결손분의 100%가 지원된다고 가정
 - (사립 일반대학) 학부 재정을 통한 충당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학부 입학금 폐지 당시 일반대학 지원율인 20%가 지원된다고 가정
 - (사립 대학원대학⁵⁾) 학부 과정이 없어 재정 구조가 취약하므로, 학부 입학금 폐지 당시 전문대학 지원율인 33%가 지원된다고 가정
 - 참고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재정 구조를 고려하여⁶⁾ 일반대학(20%)에 비해 높은 지원 비율(33%)을 적용한 바 있음⁷⁾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 부칙의 적용례 규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학기 입학생에게도 적용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대학원 신입생 수에 단가와 지원 비율을 곱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입학생 수) 2025년 대학원 입학생 수에 직전 3개년도 입학생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대학원 입학생 수 및 평균 변화율은 대학정보공시를 참조하여 산출하며, 입학금이 0원인 대학원의 학생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5)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6) 교육부는 당시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높아,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등 지원을 결정하였음

7) 교육부,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2018.01.19.

- (단가)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대학원의 2025년 입학금 평균액을 적용하여 유형별(국·공립, 사립 일반, 사립 대학원대학)로 산출
 - － 입학금이 0원인 대학원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 － 학부 입학금 폐지 당시 기준년도('17년) 입학금을 토대로 단가를 산정한 사례를 준용하여, 2025년 입학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지원 비율)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국·공립(100%) 사립 일반(20%), 사립 대학원대학(33%)를 구분하여 적용

[표 2] 입학생 수 전망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공립	34,038	34,698	35,378	36,081	36,807
사립 일반	104,106	110,173	116,633	123,513	130,842
사립 대학원대학	3,831	4,006	4,190	4,382	4,583

주: 입학금이 폐지된 대학원은 산출에서 제외함
 자료: 대학정보공시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대학원 유형별 단가

(단위: 원)

구분	입학금 액수(A)	지원 비율(B)	1인당 추가재정소요(A×B)
국·공립	184,548	100%	184,548
사립 일반	805,409	20%	161,082
사립 대학원대학	630,611	33%	208,102

주: 입학금이 폐지된 대학원은 산출에서 제외함
 자료: 대학정보공시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38억 3,700만원, 2030년 287억 5,100만원 등 향후 5년간 1,311억 1,000만원(연평균 26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공립	6,283	6,406	6,534	6,665	6,801	32,689	6,538
사립 일반	16,757	17,721	18,746	19,837	20,998	94,059	18,812
사립 대학원대학	797	833	871	910	951	4,362	872
합계	23,837	24,960	26,150	27,412	28,751	131,110	26,222

주: 대학 학부 과정 입학금 폐지 당시 지원 비율을 준용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대학 학부 과정 입학금 폐지 당시 지원 비율을 준용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학자체 노력	지원인원	765,565	610,248	590,210	550,727	154,411
	집행액	304,802	217,547	235,529	257,179	114,146
재단피해자 지원	지원인원	472	150	75	38	106
	집행액	1,172	376	166	54	231
지역인재	지원인원	29,931	27,357	23,266	22,337	21,360
	집행액	75,074	72,587	72,803	70,154	70,627
신·편입생	지원인원	480,511	483,427	375,327	338,383	—
	집행액	81,906	79,929	59,976	53,884	—
합계	지원인원	1,275,479	1,121,182	988,878	911,485	175,877
	집행액	462,954	370,440	368,474	381,271	185,005

주: 2025년의 경우 결산 전으로 수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교육부